- (마) "권상장치(Winding device)"라 함은 권동(드럼)에 와이어로프를 감아서 화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말하며,"권하"라 함은 와이어로프를 풀어서 아래로 내리는 것을 말하다.
- (바) "시브(Sheave)"라 함은 중량물의 운반장치에 사용되는 권상장치, 기복장치 등에 설치되는 와이어로프의 활차를 말하며 풀리(Pulley)라고도 한다.
- (사) "난권(Disorder winding)"이라 함은 와이어로프가 권동(드럼)에 감길 때 권동의 홈에 따라 규칙적으로 바르게 감겨야 하는데 그것이 흩어져서 와이어로프가 교 차하고 겹쳐져 감겨있는 상태를 말한다.
- (아) "샤클(Shackle)"이라 함은 연강환봉을 U자형으로 구부리고 입이 벌려 있는 쪽에 환봉 핀을 끼워서 고리로 하는 것이며, 로프의 끝 부분이나 달기체인 등의 연결고리에 연결하여 물체를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 (자) "엔드리스 와인더(Endless winder)"라 함은 곤돌라 운반구에 설치된 와이어로 프를 제어하는 기계적 장치로서 회전시브와 와이어로프 사이에 발생되는 마찰력의 유지로 곤돌라를 상 · 하로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 (차) "지지대"라 함은 곤돌라를 구성하는 부재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재로 운반구의 총중량을 지지해주는 H형강 또는 C형강의 후레임(Frame)과 웨이트(중량추)박 스로 구성되며, 지정된 수량만큼을 웨이트 박스에 적재하여 슬래브에 설치하는 대차형 지지대와 옥상 파라펫에 직접 설치하는 압착형(Hook형)지지대로 나누어 진다.
- (카) "설계 감독권자"라 함은 양중설비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 한 기술자 또는 조직을 말한다.
-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 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